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6. 25 선고 2024가단1004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5,835,991원 및 2022. 8. 3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,98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최지경

별지